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-16호

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2 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2년 8월 16일

고 흥 군 의 회 의

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「집행부에서 군의회로 이송된 예산안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예산안에 관한 지식과 전문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71조(예산안 심의)

- 제4항: 예산안 심의·의결시 예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
자문위원 위촉

- 제5항: 자문위원의 자문분야 규정
- 제6항: 자문위원의 위촉기간 규정
- 제7항: 자문위원의 일비지급 규정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8. 16. ~ 2022. 8. 20.(5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6065, 팩스 : 061-830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에 제4항 및 제5항, 제6항,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할 때 예산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명 이내의 자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의 자문 위원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
 - 2. 각종 기금회계
 - 3. 예산안 첨부 서류
- ⑥ 자문 위원의 위촉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20일 이내로 한다.
다만, 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 자문 위원에 대해선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